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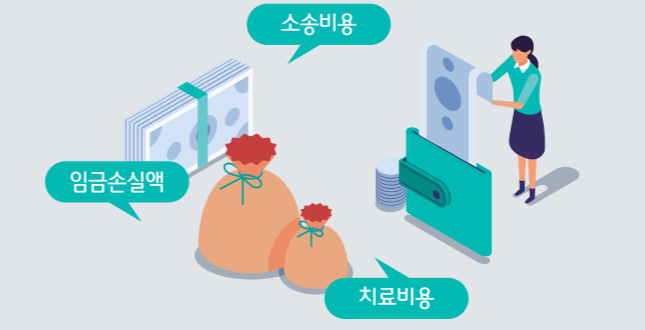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 
개정('18.5월)으로 더욱 강해진  
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합니다.



**공익신고대상 확대**      **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**



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 
'채용절차' 위반행위도 공익신고 가능



긴급한 상황에서는  
신속한 구조금 지급 가능

**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**      **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**      **보호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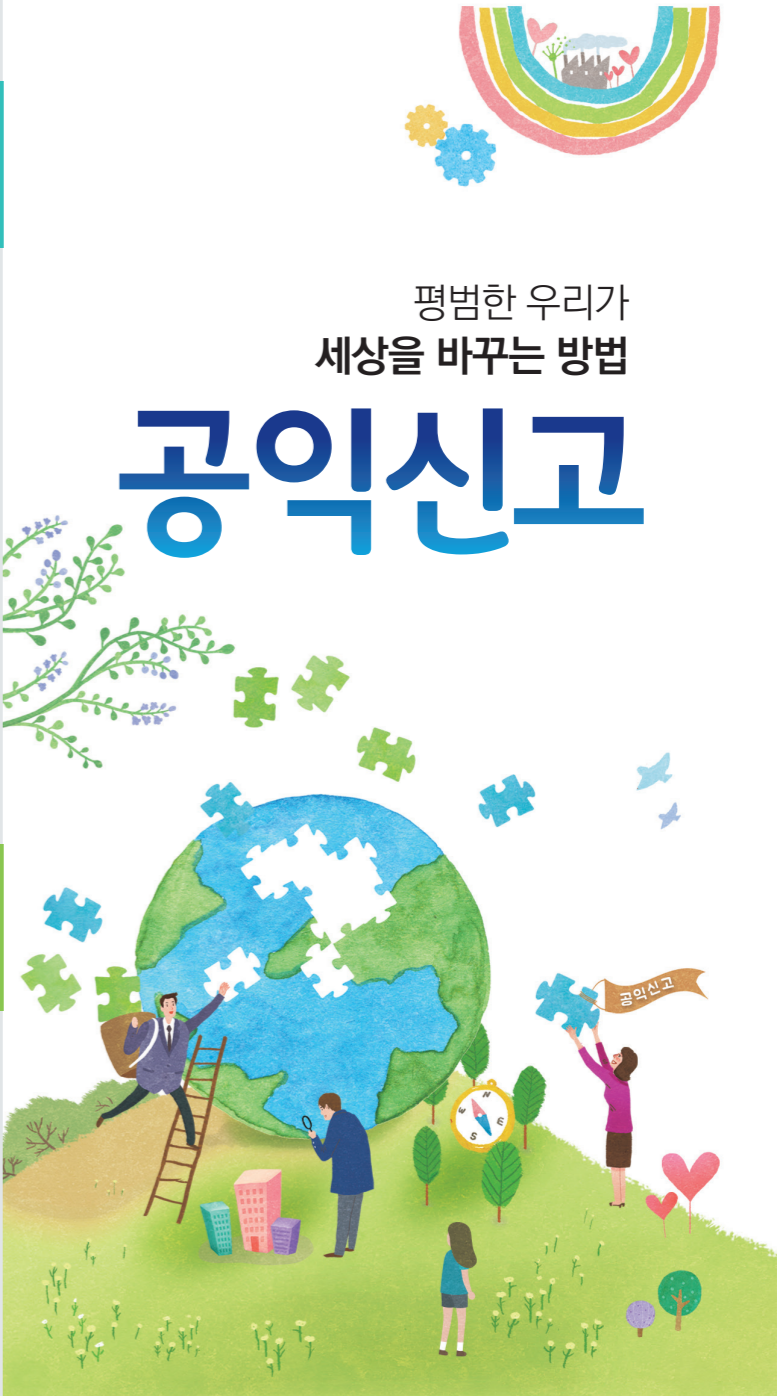
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 
권익위가 2년간 점검



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 
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



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 
형사처벌 대폭 강화





## “공익신고”란 무엇인가요?

공익신고란 **공익침해행위**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**공익신고기관에 신고**하는 것입니다.

### 신고대상

6대 분야, 284개 법률 위반행위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b>건강</b><br>불량식품 제조·판매 | <b>안전</b><br>부실시공           |
| <b>환경</b><br>폐수 무단방류    | <b>소비자이익</b><br>개인정보 무단 유출  |
| <b>공정경쟁</b><br>기업 간 담합  | <b>기타 공공의 이익</b><br>거짓 채용광고 |

### 공익신고 기관

- 1 국민권익위원회
- 2 관할 행정·감독기관(정부부처, 지자체 등)
- 3 수사기관
- 4 공사 등 공공단체
- 5 기업의 대표자
- 6 국회의원



##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신고자의 인적사항, 공익침해행위 내용,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.

### 신고상담

국번없이 110 또는 1398

### 신고접수

- | 인 터 넷 |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 
1398.acrc.go.kr
- | 우편·방문 |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 
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
- | 팩 스 | 044-200-7972

### 신고서 기재사항(법 제8조 제1항)

- 1 공익신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
※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
-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
- 3 공익침해행위 내용
-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


##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?

### 비밀보장

신고자의 동의없이,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

### 보호조치

-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·행정적·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
  -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,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
- ☞ **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**

### 신변보호

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,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

### 책임감면

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,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



## 공익신고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
### 보상금

공익신고로 국가·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

»»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 
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



### 포상금

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

»» 심사를 통해  
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



### 구조금

공익신고로 치료·이사·소송·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원